

공 포 문

제37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6. 5. 8.)에서 의결된
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5월 11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

붙임 :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**행한다**”를 “**행하며,**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개최식은 개원식으로 갈음한다.

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**제2항**”을 “**제3항**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본문 중 “**전**”을 “**전 18시**”로 한다.

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, 1차·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 받아 선거를 실시한다.

⑦ 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날 18시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3호 서식)

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

주 소

성 명

생년월일

전 화 번 호

(주택)

(핸드폰)

등록신청 직위

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
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장성군의회사무과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개회식) ① (생 략)</p> <p>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<u>행한다</u>. <후단 신설></p>	<p>제4조(개회식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 <u>행하며, . 이 경우 개회식은 개원식으로 같음한다.</u></p>
<p>제8조(의장 · 부의장의 선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<u>다만, 의장 · 부의장 단독으로 후보 등록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한다</u>. <단서신설 2018. 10. 30.>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(의장 · 부의장의 선거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. <단서 삭제> ----- ----- ----- ----- . -----</p>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한다. 다만, 최다선의</p>	<p>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, 1차 · 2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----- ----- ----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원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 등록은 서로 중복하여 할 수 없다. [본항신설 2016.5.20.]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⑥·⑦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전 18 시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⑦ 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날 18시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⑧·⑨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</p>

현 행

<별지 제3호 서식(현행)>

(별지 제3호 서식) (신설 2016.5.20)

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			
주 소			
성 명		생년월일	
전 화 번 호	(자택)	(핸드폰)	
등록신청 직위			
<p>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장성군의회사무과장 귀하</p>			

<별지 제4호 서식(신설)>

개 정 안

<별지 제3호 서식(개정)>

(별지 제3호 서식)

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			
주 소			
성 명		생년월일	
전 화 번 호	(자택)	(핸드폰)	
등록신청 직위			
<p>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: (인)</p> <p>장성군의회사무과장 귀하</p>			

(별지 제4호 서식)

후 보 자 사 퇴 서			
주 소			
성 명		생년월일	
선거구명			
소속정당명		연 락 처	
후 보 자 등 록 직 위			
<p>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를 사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위 신청인 : (인)</p> <p>장성군의회사무과장 귀하</p>			